

2023학년도 1, 2, 3학년 전·편입생 모집 요강(3월 · 1차)

자율형사립고
徽文高等學校

1 모집 인원

구분	전형 구분	모집인원 (명)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정원 내	일반전형	2	0	1	
	사회통합전형	80	86	91	
	체육특기자전형	0	0	0	
	계	82	86	92	
정원 외	고입특례대상자전형	4	9	2	
	보훈자자녀전형	11	0	14	
	계	15	9	16	

- ※ 지원자는 한 가지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 ※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하며,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기타 '국가보훈대상자'는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음.
- ※ 고입특례대상자전형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고등학교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2023.2)의 특례편입학대상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 다른 계열 : 2학년 1학기까지 지원 가능(특목고, 특성화고, 학력인정대안학교 → 본교)
- ※ **서울시내 타자사고에서의 전입은 불가함.**
- ※ 모집 인원은 추첨 당일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지원서 접수

- 가. 기간 : 2023.03.28.(화)~03.29.(수) 09:00~16:00
- 나. 접수처 : 본교 1학년부(남관 2층)
- 다. 접수 방법 : 필히 본교를 방문하여 소정 양식의 지원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선발 방법

- 가. 방법 : 공개 추첨 (6 전형 방법 참조)
- 나. 대상 :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 보훈자자녀전형

- 다. 일시 : 2023.03.30.(목) 오후 3:00
- 라. 장소 : 본교 간송실(본관 2층)
 - ※ 추첨 대상자는 반드시 추첨에 참석하여야 함
 - ※ 지원자의 학부모가 참석하여도 무방함
 - ※ 참석자는 신분증 및 전편입학 원서접수증을 지참하여야 함
 - ※ 추첨 장소는 오후 2:30부터 입장이 가능하며, **오후 3:00이후에는 입장이 불가함**
 - ※ 추첨 장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추첨 대상에서 제외함
 - ※ 예비 합격자 : 모집인원의 0.5배수 이내로 공개 추첨할 수 있음

4 합격자 발표

- 가. 일시 : 2023.03.30.(목) 오후 4:00
- 나. 방법 : 합격자 개별 통보
 - ※ 합격 공문 발송 후 일주일 이내로 전입해야 합니다.

5 지원 자격

가. 공통자격

전(편)입학원서 제출 시 전 가족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로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또는 해외 귀국자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즉 '실거주자'를 뜻한다. 만약 '가거주자(실거주자가 아닌 자)로 확인이 된 경우 전·편입학을 취소하고 원재적으로 환원한다.

나. 일반 전형

-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
- 해외귀국자 중 일반귀국자(비 특례대상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자
 - 국내의 중학교에 재학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1학기 이상의 성적이 기재되어 있는 자
 - 국내의 고등학교에 재학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1학기 이상의 성적이 기재되어 있는 자
- 해외귀국자 중 특례입학대상자가 고입특례대상자전형에 결원이 없어 지원하는 경우

다. 사회통합 전형

전형 구분	유형별 지원 자격
일반전형	공통자격을 갖춘 자
체육특기자전형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 종목 체육특기자로 선정된 자
정원내 사회통합전형	<p>기회균등전형</p> <p>60% 우선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법정차상위대상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구 차상위계층)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구 차차상위계층)로 '교육비지원확인서'를 제출한 자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위원회의 의견서 작성 및 첨부 <p>※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p>
	<p>사회다양성전형</p> <p>1순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도서·벽지가 있는 사·도의 경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이외 소년·소녀 가장 또는 조손가족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 등급 1급~3급)의 자녀 ○ 순직 군경, 순직 공무원, 순직 교원의 자녀 <p>※2022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p>
	<p>2순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자녀 모두 지원 가능) ○ 환경미화원의 자녀(사·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자녀 ○ 경찰(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 자녀 ○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위 이하) 자녀 ○ 기타 학교에서 신청하여 교육감이 승인한 유형
정원외	<p>보훈자 자녀전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자료 2」 참조 <p>고입특례대상자전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되어 통보된 자

※ 사회다양성전형은 2022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해 지원 가능

참고 사항

1.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

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지원 학생 본인이 국가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대상자 제외)이거나 부 또는 모가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범위 및 근거】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3조)
- 고엽제후유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주의)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자 자녀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사회통합전형과 별개로 시행되는 보훈자자녀 정외 외 전형 지원 대상임

【보훈자자녀 정외 외 전형 지원 대상자 근거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2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요)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요건】

- 부양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증빙 서류 예시】

-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등

다. 교육비 지원 관련 안내 사항

2023학년도 사회통합전형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의 기준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과는 별개이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2023학년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님

2. 사회통합전형 중 『사회다양성전형』

가. 필수요건

2022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 과세 금액은 부모(※ 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모두 확인·합산하여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참고자료 1) 참고)

※ 직장가입자 및 혼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주택분) 과세금액 모두 반드시 충족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충족 (※ 재산세 과세내역 확인 불필요)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최근 6개월 평균액)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2022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은 합산에서 제외

※ 재산세(주택분)는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재산세 주택 과세 합산금액임

- 전국에 소유한 모든 주택(아파트)에 대한 납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토지, 상가 등에 대해 과세된 재산세는 미포함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2인	182,739	190,860	185,461	621,840
3인	235,821	258,283	240,332	980,880
4인	287,535	320,986	296,681	1,336,560
5인	350,228	386,763	370,489	1,683,360
6인	398,320	435,141	434,898	2,022,240
7인	473,200	511,899	511,709	2,357,760
8인	511,709	549,554	567,870	2,693,280
9인	567,870	602,760	663,895	3,028,560
10인	663,895	684,512	850,979	3,364,080

나.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되었다라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게 지원 자격을 인정함

다.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자녀 : 자녀 모두 지원 가능(지원 가능 자녀수 제한 없음)하며, 학교별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함

3. 고입특례대상자(정원 외)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북한이탈주민 등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한 자	

6 전형 방법

가. 일반 전형 - 지원 자격 해당자 중 공개 추첨 선발

나. 체육특기자 전형 -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발

다. 사회통합 전형 - 지원 자격 학생 중 공개 추첨 선발

라. 보훈자 자녀전형 - 지원자(교육지원대상자) 중 공개 추첨 선발

마. 특례편입학대상자 전형 - 지원 자격 해당자 중 공개 추첨 선발

※ 교육지원대상자(정원 외)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는 기회균등전형으로 타 유형의 기회균등전형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함.

7 제출 서류

가. 공통 서류 (모든 지원자 제출)

대상	제출 서류	
모든 지원자	전(편)입학원서 (본교 양식) 1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서약서 (이중지원 금지) (본교 양식) 1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교 양식) 1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주민등록등본 (부 또는 모 세대주) 1부	주민센터(동사무소)

나. 추가 서류 (해당자만 제출)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일반전형대상자 중 해외일반귀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귀국자(일반전형) 편입학 신청서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학하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일반전형	○ 위의 공통 서류 외에 추가 사항 없음.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 증명서(출신중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1부				
사회통합 전형 공통	○ 2022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본교 양식)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사회 통합 전형	60% 우선 선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자	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1부	
			법정차상위대상자	차상위자활 대상자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본인부 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 공단) 1부
차상위장애 수당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장애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사회 통합 전형		연급대상자		
		차상위계층확 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교육비지원확인서(학교) 1부	
	학교장 추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학년도 고입 기회균등전형 중 '학교장 추천자' 유형 학교장 추천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확인*)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해당 중학교장 직인으로 원본대조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 압류 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폐업 확인서, 급여 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 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 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세 과세 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보훈자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관할 보훈지청) 1부	
	1순위	공통 (가구원 수별 중위소 득 160% 이하)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확인*)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혼합(지역+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확인*)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 으로 발급받아 제출(동주민센터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 불가)
		다문화가정의 자녀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1부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 호받는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 단, 만18세 미만 아동에 한함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소년·소녀 가장, 조 손가정의 자녀	사실 관계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1부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2순위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대조필) 1부 ※ 2019년7월1일 이전 발급 장애인 등록증: 장애 1~3급	
		순직 군경·순직 교원 ·순직 공무원의 자녀	순직 군경·순직 교원·순직 공무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한부모가정 자녀	추가서류 필요 없음. (단, 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를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	
	다자녀가정(3자녀 이 상) 자녀	추가서류 필요 없음. (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함.) ※ 단, 입양으로 인한 다자녀가정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로 제출	
	환경미화원의 자녀 (사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재직증명서 1부	
	군인 자녀(준부사관 이 하)	재직증명서 또는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경찰 자녀(경위 이 하)		
	소방공무원 자녀(소 방위 이하)	관련 증빙 서류	
	기타 학교에서 신청 하여 교육감이 승인 한 유형		
	보훈자자녀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관할 보훈지청) 1부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증명서 제출 불필요 	
고입특례 대상자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재적(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학하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부, 모, 학생 각 1통)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또는 체류국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체류기간 확인서(부, 모, 학생) 고입특례대상자 편입학 신청서 기타 서류는 서울시교육청 '2023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참고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 2023학년도 등록금(수업료 포함)은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793호, 시행 2018.01.04.)제2조(징수금액) 및 제7조에 따라 본교의 장이 정함.
- 본교 지원자는 동일 기간에 실시하는 다른 학교의 전·편입학 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
- 지원자는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체육특기자전형, 보훈자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서를 포함한 제출서류는 접수 기간 중 반드시 본교를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마. 제출받은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바. 공개 추천에는 보호자 또는 학생이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할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사. 지원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자, 각종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합격 통지 및 전·편입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아. 지원자가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발견될 경우 합격 통지 및 전·편입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자. 동일 기간에 본교와 다른 학교에 이종으로 지원하거나, 본교의 각 전형에 중복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합격 통지 및 전·편입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차. 지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전편입학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수집, 이용, 제공됨. 원서접수 시 이러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음.
- 카. 모든 지원자 및 학부모는 본교의 교육목표 및 비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침에 동의하여야 함.
- 타.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파. 전·편입학 관련 문의처 : 본교 홈페이지 및 인재기획부에 문의
 - 1) 주소 : [우편번호 0618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541
 - 2) 전화번호 : 대표전화 ☎ 02) 500-9500
1학년부 02) 500-9556 / 9542
FAX : 02) 568-7079

참고 자료 1 건강보험료 기준 및 가구원수 적용 매뉴얼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외)조부, (외)조모 제외**]
 -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 기혼인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포함(단, 원수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만 인정).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 미포함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친부 또는 친모)를 포함하여 가구원 수 산정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친부와 친모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확인하여 합산

③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적용 방법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소득이 없는 달(한시적으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은 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시 휴직 전 납부된 건강보험료로 산정
 - ※ 입학 지원서 제출 당시 복직한 경우 복직 후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로 산정
- (적용)
 -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4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4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혼합 6만2천원)

대상자	근거	증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제18호, 제73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3호 	5·18민주유공자 (유족) 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제3호 	특수임무유공자 (유족)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유족)확인원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 대상으로 별개 사항임